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3
------------	----

제출연월일 : 2008. 5.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제안이유

- 가. 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용도지역 변경(녹지→주거)으로 농지 등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분리과세→종합합산)되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 나.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실제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동안 지방세를 조례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토지의 활용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GB 해제, 녹지지역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등하는 경우
 -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경농지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현실화
- 나. 제19조의 2(안)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 감면대상을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한정.
 - 3년간 단계적으로 감면폭을 축소($75 \rightarrow 50 \rightarrow 25\%$)하되
 - GB 해제·용도지역 변경고시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 '08년도 과세분부터 적용.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 고시일) 현재 8년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19조의 2(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 고시일) 현재 8년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 일 것